

고 시**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- 호**
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(정선사북)

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선사북 공공주택건설(행복주택/국민임대) 사업계획을 승인하고,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9월 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사 업 명 : 정선사북 공공주택 건설사업 (행복주택/국민임대)
2. 사업시행자
 -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정관
 -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(충무공동)
3. 사업개요
 - (대지위치) 강원도 정선군 사북리 사북읍 344-4번지
 - (사업면적) 7,505.16㎡
 - (대지면적) 7,505.16㎡
 - (연 면 적) 8,503.53㎡
 - (사업규모) 아파트 4개동(행복주택 120세대, 국민임대 30세대, 10층 이하) 및 부대·복리시설
 - 구 조 :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(지상1층 일부 라멘구조)
4. 사 업 비 : 24,112,416천원 (주택도시기금 9,030,300천원)
5. 사업기간 : 사업승인 고시일 ~ 2025. 12.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·지번·면적·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·주소를 기재한 서류 : [붙임1]
7.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
 - 가.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 : [붙임2] (도면생략)
 - 나.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: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(<http://luris.molit.go.kr>)에서 열람할 수 있음
8. 기 타 : 관계 도서는 강원도청 건축과, 정선군청 도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(033-258-4452)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

[붙임1]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·지번·지목·면적·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, 주소

일련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㎡)		소유자		관계인		
				공부면적	편입면적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관계
1	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	3444	학	7,505.16	7,505.16	정선군	-	-	-	-
계				7,505.16	7,505.16					

[붙임2]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

정선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① 정선 군관리계획 (사북리3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조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2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3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4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. 가구 및 획지 계획

1) 단위대지 규모

구분	시설명	계획내용	비고
기정	주거지역	○최소개발규모 : 60㎡, 최대개발규모 : 1,000㎡	
변경	주거지역	○최소개발규모 : 60㎡, 최대개발규모 : 1,000㎡ (다만,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4-4 제외)	
기정	상업지역	○최소개발규모 : 150㎡, 최대개발규모 : 2,000㎡	변경없음
변경	상업지역	○최소개발규모 : 150㎡, 최대개발규모 : 2,000㎡	
기정	공동건축	○공동건축(규제 또는 권장)등이 표시된 경우 그에 합당하게 건축	변경없음
변경	공동건축	○공동건축(규제 또는 권장)등이 표시된 경우 그에 합당하게 건축	

나. 가구 및 획지 계획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5.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6.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